

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00
----------	-----

2025. 10. 14.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9. 30. 강남구청장(기획예산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14.)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기획경제국장 심혁보)

2026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 예정인 바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: 지방공기업평가원

나. 출연근거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
- 「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p.103
- 「2026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(안) 협의 결과 알림」
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-1885호(2025. 7. 31.)

다. 출연내용 :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
재정지원

라. 출 연 금 : 21,200천원

마.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	2026 요구액	2025 당초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306-01	출연금	21,200	21,200	0	-
	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	21,200	21,200	0	-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: 이주현)

가. 출연 취지 및 배경

○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

- 지방공기업평가원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¹⁾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, 관련 정책의 연구,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. (지방공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)

<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주요 업무 >

- 사업대상 : 지방공기업
 - 지방직영기업(지방자치단체가 직접경영)
 - 지방공사, 지방공단(지방자치단체가 간접경영)
- 사업내용 :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, 설립·투자 타당성 검토, 정책연구, 임직원 교육 등

1) 지방공기업법

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, 관련 정책의 연구,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“평가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는데,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해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고,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자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함.

○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 대상

-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 대상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방공기업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²⁾ 1곳임.

나. 검토 내용

○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서

- 2026년 출연금 요구서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76조에 근거한 출연금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됨.

< 출연금 편성기준 적용 >

- 적용대상: 강남도시관리공단

※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클린아이) 2024. 12. 31. 공시 기준
 직원 수 합계: 642명(비정규직 포함) / 매출액: 약 384억원 / 자산: 약 22.5억원

구간	구간별 산정금액 (천원)	직원수 (명)	가중치	매출액 (억원)	가중치	자산 (억원)	가중치
0.5	1,500	50명 이하	-	-	0.5	-	0.2
1	9,000	51 ~ 150명		10억원 미만		10억원 미만	
2	18,000	151 ~ 300명	10억원이상 ~ 100억원 미만	10억원이상 ~ 100억원 미만			
3	27,000	301명 ~ 1,000명	0.3	100억원이상 ~ 500억원 미만	0.5	100억원이상 ~ 500억원 미만	
4	36,000	1,001명 ~ 2,000명	0.3	500억원이상 ~ 1,000억원 미만	0.5	500억원이상 ~ 1,000억원 미만	0.2
5	45,000	2,001명 이상		1,000억원 이상		1,000억원 이상	

{ 직원수 (27,000천원×0.3) + 매출액 (27,000천원×0.5) + 자산 (18,000천원×0.2) } - 기초 감경 (4,000천원) = 21,200천원

직원수(0.3)		매출액(0.5)		자산(0.2)		기초 감경 (천원)	'26년 배정액 (천원)
구간	금액(천원)	구간	금액(천원)	구간	금액(천원)		
3	8,100	3	13,500	2	3,600	-4,000	21,200

2) 1999년 강남구가 100% 출자하여 설립함.

다. 종합 의견

○ 출연 목적

- 지자체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게 출연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,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받은 출연금을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.

<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목적 >

-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본연의 목적에 따른 업무수행 지원
 -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, 관련 정책의 연구, 임직원 교육 등
-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원활화

- 이번 동의안 제출 시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대부분 전년도 지출예산액과 유사한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고 있으나, 직원 수가 전년도 대비 8명 증가하여 평가원 규모에 비해 단 1년 만에 인원이 크게 늘어났고 일반관리비가 증가했음이 확인됨. 이에 대해 평가원은 필수인력 충원과 운영재정 증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함.

○ 향후 과제

-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공하는 정책연구, 컨설팅, 경영평가, 기관 설립 및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, 임직원 연수, 각종 지원 서비스 등을 활용하고, 활용 내역을 관리하고 만족도 조사에 후기를 기재하여 상호 간에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※ 관계 법령

지방재정법 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71호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**출연**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**출연**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지방공기업법 [시행 2025. 10. 2.] [법률 제20868호]

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공기업법 시행령 [시행 2025. 1. 31.] [대통령령 제35228호]

제76조(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)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·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: 재정력, 공기업 수 등
2.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: 매출액, 직원 수, 자산 등

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

306 - 01 출연금 (p.103)

1.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 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한국지역진흥재단, 한국지방세연구원,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